

2022년 하반기 KAIST 일반직 직원(변리사) 채용 공고

KAIST에서는 “국가와 인류, 지구를 위한 독특한 빛깔의 세계 10위권 대학”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창의 · 도전 · 배려의 정신을 갖춘 인재를 모집합니다.

1 모집분야 및 인원

(단위:명)

모집분야	모집구분	모집인원	직종/직급	주요직무내용
변리사	경력	2	기술직 원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및 해외 특허 평가, 출원, 등록 및 유지 - 기술이전 및 IP 수익화 -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 계약서 검토 - IP 활용, 기술이전 사업화 전략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등

1. 원급으로 채용하며, 적격자가 부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2. 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채용 시 지원한 분야와 다른 분야로 직무조정 및 재배치 등 조정 가능
3. 자세한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

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
구분	주요내용
지원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변리사법」에 따른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1년* 이상 경력자 (*변리사 자격증 소지 시점 이후의 Full-time 상근 경력을 기준으로 인정하며, 인턴, 파견근로 아르바이트 등은 제외함.)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- 병역의무를 펼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-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임용예정일(2023.2.1.)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
결격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-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- 「병역법」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-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-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자
우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: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(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) - 장애인: 모든 전형에서 만점의 5% 가점 부여 - 2014년 KAIST 청년인턴 수료자의 경우 서류전형 가점 부여 (※ 2014년 KAIST 청년인턴 수료자의 서류전형 가점부여 제도는 2024년 채용공고부터 폐지) ※ 우대점수는 항목별로 별도로 적용하되 우대점수의 총합은 만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.

3

근무조건

구분	주요내용
고용형태	정규직
임용직급	원급 (기술원)
근무형태	전일제 (주5일, 40시간)
수습제도	(기간) 임용일로부터 6개월 (처우) 월급여를 100% 지급 (평가) 평가결과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면직될 수 있음.
급여수준	기관 관련 규정에 따름(단, 입사 후 만 1년까지는 기여성과급 미지급) ※ 직무 관련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며,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부터 인정함.
근무지	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
임용예정일	2023.2.1. (※기관 사정에 따라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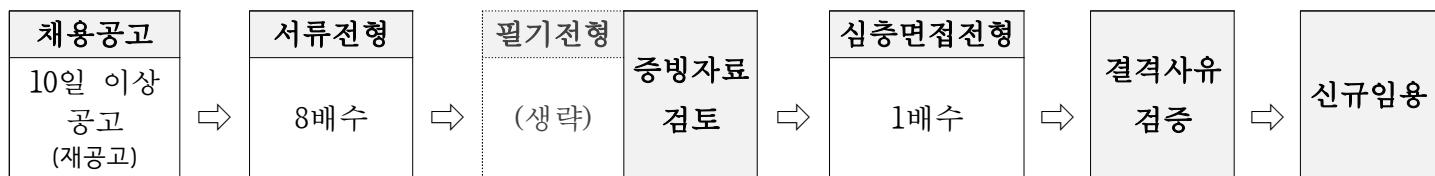
4

지원방법 및 기간

구분	주요내용
지원방법	-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 (http://kaist.recruitment.kr) - 온라인 채용시스템 외에 우편이나 메일로는 접수하지 않음. - 최종제출 되지 않은 임시저장 상태의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.
접수기간	2022.11.26.(토) 14:00 ~ 2022.12.5.(월) 23:59:59 ※ 마감시각 임박 시 채용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.

5**전형방법 및 일정**

※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가. 전형절차 개요**나. 서류전형**

- (평가일정) 12월 초 예정
- (평가방식)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의 정성·정량평가

평가항목	배점	평가방법		비고
교육사항	20			
경험 및 경력사항	30	정성평가	평가위원	- 합격배수: 8배수 - 예비합격배수: 5배수
문제해결능력, 의사소통능력	40			
자격사항	10	정량평가	채용담당자	
합계	100			

- (교육사항 · 경험 및 경력사항) 응시원서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위원의 정성평가
- (자기소개서)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평가위원의 정성평가

자기소개서 문항	KAIST가 지원자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기술해 주십시오. (100자 ~ 3000자 이내)
----------	--

- (자격사항) '(붙임1) 서류전형 인정자격증 목록'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시 점수 부여
- 합격자 선정 및 동점자 처리기준
 - (합격자 선정) 평가위원 평균점수(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) 기준,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배수에 맞게 선정
 - (동점자 처리기준) 합격선의 동점자 모두에게 다음 심층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

다. 증빙자료 검토[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]

- (일정) 2022년 12월 초~중순 예정
- (대상자) 서류전형 합격자
- 증빙서류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하며,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.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기재 내용이 증빙서류와 상이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,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불합격 처리, 합격취소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 ※ 응시원서 작성 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재
 - (미제출 시)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
 ※ 여러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
 - (기재오류)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(단순 기재오류에 한함) 별도의 위원회에서 오류의 경증을 판단하여 불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.

[제출서류 목록]

지원자격	학력증명서,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류
교육사항	성적증명서, 수료증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
경력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력증명서(또는 재직증명서) - 4대보험¹⁾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 (※프리랜서, 해외경력 등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, 별도로 제출서류를 정함)
기타활동	기재 내용 관련 증빙서류
자격사항	자격증 관련 증명서류
우대사항	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제출처:KAIST 또는 한국과학기술원), 장애인증명서
기타	기타 관련 서류

1)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보험확인서),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 중 1개의 확인서 제출

※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발급한 공적인 서류를 기본으로 하며(컴퓨터 화면 캡쳐 자료 등은 불인정), 진위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.

라. 심층면접전형

- (평가일정/장소) 2022년 12월 중순~말 예정 / KAIST 대전 본원

※ 대면면접이 아닌 화상면접으로 진행 시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

- (평가항목 및 기타사항)

평가항목	배점	평가방법	비고
지식/기술	40		
태도	20	- 직무 관련 발표면접, 경험면접 등 다양한 방법 활용	- 합격배수: 1배수
문제해결능력	10		- 예비합격배수: 2배수
의사소통능력	10	- 영어인터뷰를 통해 기본적인 영어 소통 능력 확인	
대인관계능력	10		
직업윤리	10		
합계	100		

- 합격자 선정 및 동점자 처리기준

- (합격자 선정) 평가위원 평균점수(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) 기준,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배수에 맞게 선정
- (동점자 처리기준) ①취업지원 대상자, ②장애인, ③지역인재, ④이전 전형 고득점자, ⑤면접전형의 평가위원 평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

※ 심층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은 기관 관련 규정을 따름

마. 결격사유 검증

- (일정) 2023년 1월 초~중순 예정
- (대상자) 심층면접전형 합격자
- (검증내용)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증

제출서류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- 병적증명서(해당자) - 성범죄경력조회서 - 기타 관련 서류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발급기관 서식 (단, KAIST 양식이 있는 경우 제외) 경력사항에 기재한 기업 및 기관 등에 전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음.

6 이의신청 및 서류반환신청

가. 이의신청

구분	주요내용
운영목적	-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
신청기간	-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 익일 자정까지 신청 -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
신청방법	-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(recruit@kaist.ac.kr)에게 제출
처리대상	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-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.

나. 채용서류 반환신청

구분	주요내용
청구기간	- 심층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
신청방법	- 채용담당자(recruit@kaist.ac.kr)에게 별도 신청
반환대상	- 채용서류(기초심사자료, 입증자료, 심층심사자료 등)
반환제외대상	- 채용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- 지원자가 KAIST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

7 유의사항

가. 지원서 작성에 관한 사항

- 응시원서 마감시각 임박 시 접속인원 과다로 채용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응시원서 제출을 부탁드리며, 접수 마감시간을 앞두고 접속오류,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접수 불가 시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, 누락, 지원자격 미충족 및 연락불능,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.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, 부적격 처리하고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
※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, 비속어 기재 시 불합격 처리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반드시 ‘응시원서 기재 가이드’를 참고하여 기재

나.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

- 응시원서 인적사항이 아닌 자기소개서에 이름 기재 시 불합격 처리
- 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 블라인드 처리
 - ※ 출신학교 외에도 모든 학교명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기재 (예: OO대학교)
-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,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편견 유발 항목을 직·간접적으로 기재 시 감점 처리함.
 - (편견유발항목) 출신지역, 출신학교(학력), 가족관계, 성별, 연령, 신체조건 등

항목	예시
출신학교	(예시1) 박사 졸업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서울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~ → 출신학교명을 직접적으로 기재하였음. (예시2) 가오리라는 수영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~ → 가오리가 KAIST 동아리라는 것을 아는 평가위원은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감점 처리
출신지역	(예시)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에서만 자라왔으며~ → 출신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기재함.
가족관계	(예시1) KAIST 교수이신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며~ (예시2) 부모님 모두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~ → 가족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재함.
성별	(예시1) 군복무를 현역(운전병, 군수병, 전경, 의경 등)으로 의무복무를 하였으며~ → 병사로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는 남자이므로 성별 유추 가능 (예시2)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~ →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것은 남자이므로 성별 유추 가능 (예시3)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으며~ → 성별을 직접적으로 기재함.
연령	(예시1)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~ (예시2) 저는 소띠라서 소처럼 우직한 성격으로 ~ → 연령을 직접적·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기재함.

-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(이름, 전화번호, 이메일 등) 및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(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정보 포함)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.

다. 부정행위 관련 사항

○ 채용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

한국과학기술원 전형요령 제24조(처벌사항) 관련 부정행위 관련 처벌사항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,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.

1.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2.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
3.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
4.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
5. 청탁 · 압력 · 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
6. 부정합격자*

*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

○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 · 채용취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
라. 기타사항

- 전형일정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.
- 채용화정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제출해야 함.
※ 단,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,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 포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사포기 서류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.
- 채용화정자의 채용취소, 임용불응,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, 기관 필요시 최대 1년 이내에 채용을 할 수 있음.
-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(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·외가 4촌 이내)의 KAIST 재직 여부를 확인하며,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.
- 채용 관련 문의처: 채용담당자 연락처(recruit@kaist.ac.kr, 042-350-4134)
-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: KAIST 채용노무팀(recruit@kaist.ac.kr)

붙임1

서류전형 인정자격증 목록

자격증 분야	자격증	자격관리기관	등급	배점
한국사	한국사능력검정시험	국사편찬위원회	1	5
			2	4
			3	3
한국어	KBS한국어능력시험	KBS한국방송공사	1	5
			2+	4
			2-	3
	국어능력인증시험	재단법인 한국어문화연구원	1	5
			2	4
컴퓨터	컴퓨터활용능력	대한상공회의소	3	3
			1	5
			2	4
TOEIC	TOEIC	YBM	900점 이상	5
			850점~899점	4
			800점~849점	3

- 1) 자격증 분야 기준 최고점만 적용하며,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.
- 2) 인정자격증 목록 이외의 자격증은 서류전형에서 점수로 반영하지 않음.
- 3) 자격증은 채용 공고 시작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함.

불임2**한국과학기술원 결격사유**

인사규정 제12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.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
3. 삭제

4. 「병역법」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
5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
6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